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 엠바고와 보도유예의무

요즘 ‘엠바고(embargo)’ 라는 말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납치된 지 500일이 넘었다는 제미니호 관련 기사, 교도통신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보도 모두 ‘엠바고’ 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언론보도와 관련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엠바고’ 는 본래 외교·통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10월 10일자 매일경제 1면 기사에서는 엠바고를 한 나라가 자국 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선박에 대해 내리는 ‘출항정지명령’ 으로 설명한다. 그랬던 엠바고가 지금은 ‘시한부 보도유예’ 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엠바고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효력이다. 엠바고는 그것을 수용한 언론사에 보도유예의무를 부과하는가? 엠바고를 거절했거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언론사는 또 어떻게 되는가? 엠바고를 취재원과 언론사 사이의 업무협조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엠바고를 깬 언론사에 대해 종 종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엠바고의 법적 효력을 검토 하는 것도 전혀 무리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실제 엠바고의 효력과 관련된 판결이 지난 6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2011가합3841).

소송의 발단은 작년 1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삼호주얼리호 사건이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는 두 차례에 걸친 군사작전 끝에 납치된 지 6일째 되던 날 극적으로 구출된다. 그런데 1차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등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차 작전이 실패로 끝난 후인 그 달 20일 A일보는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 제하의 1면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한다. 당시 1차 작전 실패 관련 보도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구출작전이 완료 될 때까지 엠바고가 걸린 상태였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관련 보도를 내지 않고 있었다. 결국, 국방부 는 해당 기사를 문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제재조치(기자실 출입제한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를 A일보에 내렸다.

A일보는 이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 점은 물론, 엠바고였다. 과연 국방부 출입기자를 두고 있지 않은 언론사에도 해당 기관과 출입기자 사이에 체결된 엠 바고는 효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법률상의 보도유예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 다.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다른 취재기자들에 의해 엠바고 요청이 수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엠 바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보도하려는 특 정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 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에 따르면, 엠바고 대상이 아닌 언론사라도 엠바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유예의무가 발생한 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안에 따라서’ 다. 궁금했던 점은 엠바고의 효력인데 ‘사안에 따라서’ 라는 말이 논점을 흐리 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A일보가 보도유예의무를 깬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엠바고가 언론사에 보도유예의 무를 부과하는가’ 라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엠바고 때문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보도유예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엠바고 자체는 보도유예의무와는 무관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엠바고를 깨고 단독보도를 한 A일보를 무조건 두둔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어차피 강제할 수도 없는 엠바고인데 그 것을 깬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언론사나 정부 모두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인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